

서울특별시 운현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695
----------	------

제출년월일 : 2021년 8월 1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운현궁(사적 제257호)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시 소유 문화재로서,
- 나. 국가 지정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을 위한 전통문화 프로그램 활성화와 다양한 콘텐츠 개발, 열린 문화공간으로서 서울을 대표하는 이색 관광명소로서 특화 및 거점화시키고자,
- 다. 문화재 보전, 전승 또는 문화예술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 행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해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개요

- 사 무 명 : 운현궁 운영 및 관리
- 위탁기간 : 3년 ('22.1월 ~ '24.12월)
- 위탁방식 : 시설형 민간위탁 (예산지원형)
-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재위탁)
- 소요예산 : 연772,434천원 (산출근거 : '22년 운영예산 기준)
 - 산출근거 : 인건비 373,870천원(10명) / 운영비 136,343천원 / 행사비 150,026천원 / 일반관리비 14,701천원 / 이윤 30,000천원 / 부가가치세 67,494천원

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36조(시 소유 문화재의 운영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추진 필요성

- 시민이용형 시설의 관리·운영과 전통문화 계승을 위하여 다수 직렬의 인력 확보와 인건비 예산확대 등의 부담이 적고, 신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대처가 유연하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문 홍보 수단 제작이 가능하므로 민간위탁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다. 주요 위탁사무

- 운현궁 운영 및 유지·관리
- 운현궁 공연 및 기획사업 등 프로그램 개발·운영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관광진흥을 위한 전통문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역사체험, 교육 등 운현궁에 적합한 다양한 수익사업 개발·운영
- 브로슈어 제작 및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를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 연간 운영성과 분석 및 개선·활성화 방안 마련·시행
- 기타 전통문화의 계승·보존을 위하여 “시”가 위탁하는 사업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64(운니동)
- 시설규모 : 대지 7,100㎡, 건물 6동 1,299.36㎡
- 공간구성 : 노안당 · 노락당 · 이로당, 수직사, 전시관, 기획전시실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36조(시 소유 문화재의 운영위탁) ① 시장은 시 소유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 소유 문화재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1. 문화재 보전, 전승 또는 문화예술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 또는 자치구
2. 시 소유 문화재를 관광자원화하거나 명소(名所)화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또는 자치구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제13조(운영지원) ①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2년 예산편성 시 반영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역사문화재과 문화재관리팀 정운서 (☎ 2133-2628)